##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27

발의연월일: 2022. 7. 19.

발 의 자:송기헌·김민기·김홍걸

신영대 · 이해식 · 임종성

정일영 · 조승래 · 한병도

허 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사경찰을 「군사법원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군인과 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 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
최근 「군사법원법」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 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호). 법률 제 호

###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 중"「군사법원법」 제33조제1항"을"「군사법원법」 제43 조제1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군사경찰"이란 <u>「군사법원</u>	1
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	법」 제43조제1호
과의 장교・준사관・부사관・	
병(兵)과 「군무원인사법」에	
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	
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	
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	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	
을 말한다.	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